

의안번호	2122926
의 퇴 인	한정애의원
회 답 일	2023. 5. 25.
추 계 번호	23B2321

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□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(안 제6조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종식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
 1. 식용개농장¹⁾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
 2.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
 3.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함. 이하 같음)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(제2항)
-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항)

□ 실태조사(안 제7조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함)를 실시할 수 있음.
 1. 식용개농장 분포 현황
 2. 식용개농장 종사자 현황
 3. 식용개농장의 개 사육두수 및 사육환경 현황
 4. 그 밖에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□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·운영(안 제8조)

-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식용개농장”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.

2. “농장주”란 식용개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
-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3항)
-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

□ 폐업에 대한 지원(안 제9조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농장주가 해당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
 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
 2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
 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
 4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
-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. 이 경우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처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(제2항)
 1. 「동물보호법」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의 이관
 2. 「동물보호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로의 이관
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. 이 경우 식용개농장의 폐쇄 시기에 따라 우선 지원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
 1. 시설물잔존가액 및 시설철거비
 2.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처분
 3. 그 밖에 폐업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신청,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, 폐업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(제5항)

□ 전업의 지원(안 제10조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. 이 경우 전환하려는 업종에 따라 우선 지원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
 1. 직업 교육·훈련
 2. 고용정보 제공,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
 3.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
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(제2항)

□ 소유권 제한 등(안 제13조)

- 제16조제1항 및 제2항²⁾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(제1항)
-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. 이하 같음)은 제1항을 위반하여 개를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개를 격리하고 보호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제2항)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2) 안 제16조(벌칙)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
2.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·운반·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

Ⅲ. 미첨부 사유

- 제정안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음
 - 제정안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식용개농장 실태조사, 폐업지원금 지급 및 전업지원, 남겨진 개의 처분 및 이관 등을 규정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※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하게 개 식용을 금지하며 폐업 지원금 지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「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2건이 발의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중임

[표 1] 제정안과 유사한 입법발의 현황

의안명	대표발의 (발의일)	의안번호	주요 내용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	한정애의원 (2020.12.30.)	210703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·고양이 식용 판매 금지 • 위반 시 처벌 •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의 지원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	태영호의원 (2023.04.14.)	212137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 식용 판매 금지 •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위반 시 처벌 •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금

자료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·정리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 조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1.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(안 제6조), 실태조사(안 제7조),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·운영(안 제8조)

-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비용, 실태조사 비용,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·운영 비용은 현행 사업예산으로 수행가능하거나 자체 수립 가능할

것으로 보여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- 현행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자체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문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현행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자체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문

조문	사유
실태조사(안 제7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물보호및복지대책 (3741-338) 사업 중 실태조사 예산 편성중³⁾ - ('21) 6억원 → ('22) 6억원 → ('23) 7억원
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(안 제6조),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·운영(안 제8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년 12월 「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」가 출범되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음 - (위원회 구성) 육견 업계, 동물보호단체, 전문가(갈등관리 등), 소비자단체, 정부인사를 포함한 21명으로 구성(위원장: 서울대 정광호 교수) - 전체회의 11회, 소위원회 12회 총 23회 회의 개최 • 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,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국 운영비로 집행중 - ('22) 58백만원(회의참석수당, 인쇄비, 회의록 작성, 회의장 임차료 등) → ('23.5.) 9백만원(회의참석수당, 회의록 작성 등) • 기본계획은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「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Ⅱ-1)」(2023.1.)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. 폐업에 대한 지원(안 제9조), 전업의 지원(안 제10조), 소유권 제한 등(안 제13조)

-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용개농장 및 농장주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추가폐업지원금(시설물잔존가액 및 시설철거비 등)을 지급하고, 전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- 또한 폐업 후 남겨진 개 및 격리조치가 내려진 개(이하 “잔여견”이라 함) 등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이관하여 보호·관리하게 하는

3)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는 「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」가 실시한 식용 개 사육·유통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음.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동 실태조사 결과자료는 해당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음

* KBS,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으로, 개사육 농장 1,150여 곳에서 개 52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함(2022.8. 보도)

경우 지원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- 「동물보호법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등이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⁴⁾

- 그러나 제정안은 폐업지원금 및 추가폐업지원금의 신청, 구체적인 산출 기준 및 방법, 지급절차, 전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시설물의 잔존가액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자료가 부재하여,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또한, 현 시점에서는 폐업 및 격리조치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이관되는 잔여견 수의 예측이 곤란하여, 잔여견의 보호·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3. 추계결과

-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4) 「동물보호법」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7조(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)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(이하 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, 주소,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국회예산정책처	경제비용추계과
과장	최철민
추계세제분석관	이주호
연락처	02-6788-3746
	progress@nabo.go.kr
